

# 대신대학교 강의평가 규정

**제1조(목적)** 본 강의평가의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교수강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기초평가, 강의내용 및 진행, 종합평가의 세 분야로 나뉘며, 전체 12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은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강의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평가 항목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03.14.)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 교과목은 매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대상으로 한다. 단,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평가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평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평가주기)** ① 평가주기는 매학기 2회(중간,기말)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3.14.)

② 중간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간평가결과는 교과목 담당 교원의 자가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학기말 평가결과를 강의평가결과로 산정한다.(신설 2022.03.14.)

**제5조(평가점수)** ① 평가항목별 A는 5점, B는 4점, C는 3점, D는 2점, E는 1점으로 하여 얻은 취득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② 강의평가를 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평가점수 산출시 제외한다.

**제6조(평가절차)** ① 삭제(2023.08.01.)

② 평가결과는 해당과목의 학과장 및 피평가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자료 열람 요구가 있을 시는 열람할 수도 있다.

**제6조의 2(강의평가관리위원회)** ① 강의평가 항목 개발, 결과 활용 및 기타 강의평가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의평가관리위원회를 둔다.(신설 2022.03.14.)

②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교육과정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신설 2022.03.14.)

③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위원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2.03.14.)

**제7조(결과활용)** ① 강의평가 설문항목의 평가결과를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고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환산 평가점수가 70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강의에 반영토록 한다. (개정2023.08.01.)

② 평가결과를 근거로 수강생의 제안 및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③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전임, 비전임, 강사 포함)에 대하여는 수강인원 고려하여 인원 규모별로 포상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강의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른다.  
(신설 2022.03.14.)

④ 강의평가 교과목 평균 70점 미만이거나 2회연속 70점 미만인 과목이 있는 전임교원은

승진 및 연구년제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며, 동일 교과목 강의평가 결과가 해당 학기 2년 연속해서 7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동일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한한다.

(신설 2022.03.14.)

⑤ 강의평가 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교과목 담당 강사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수역량 향상 지원 프로그램이 개설될 경우 1회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2회 불참시에는 재임용 심사시 정성평가 심사항목에서 최하점이 반영된다. (신설 2022.03.14., 개정 2023.08.01.)

⑥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업개선계획(CQI)을 수립하고 다음 학기 수업에 반영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신설 2022.03.14., 개정 2023.08.01.)

⑦ 강의평가결과는 강의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한다.(2022.3.14. 신설)

**제7조의2(강의평가결과 공개)** ① 강의평가 결과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23.08.01.)

1. 공개대상: 강의평가 대상 전체 강좌
2. 공개범위: 대학의 강좌별 강의평가 점수
3. 공개기간: 강의평가 종료 후 1년간

② 강의평가를 공개할 때 수강인원, 평가참여인원, 강의평가 점수 등을 포함하여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23.08.01.)

**제8조(비밀유지)** 평가업무에 참여한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